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5655 |
|----------|-------|

발의연월일 : 2025. 12. 29.
발의자 : 윤준병 · 송옥주 · 임미애
문대림 · 이성윤 · 전종덕
최혁진 · 임호선 · 김 윤
임오경 · 강준현 · 전용기
서영석 · 김교홍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수한 건축물 조성을 위해 공공건축 사업 등에서 설계공모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설계공모는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건축 디자인을 선정하는 핵심 절차이나, 그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건축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건축도서를 정확히 독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심사가 필수적이지만, 현재는 이러한 전문적 능력을 갖춘 심사위원 위촉을 강제할 법적 장치가 미흡하여 발주기관의 입맛에 맞는 심사위원 구성으로 인해 ‘제 식구 챙기기’ 식의 심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상존하는 실정임.

이에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심사위원 선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 그룹의 추천을 통해 위원

을 위촉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만큼 「건축기본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나 민간전문가, 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구로부터 추천받은 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심사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형법」상 뇌물죄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擬制)함으로써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강력한 부패 방지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 방식을 적용하여 발주하려는 자는 공모안의 심사를 위하여 설계공

모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설계공모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건축도서의 해독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건축기본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역건축위원회

2.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민간전문가

3.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의2에 따른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공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p><u>제21조의2(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발주하려는 자는 공모안의 심사를 위하여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u></p> <p><u>② 설계공모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③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u>④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건축도서의 해독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건축기본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역건축위원회</u> <u>2.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민간전문가</u> <u>3.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u> <u>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u> |

| <u>정하는 자</u> |
|--|
| <p>제35조(별 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 로 본다.</p> |
| <p><u><신 설></u></p> |
| <p><u>1. ~ 3. (생략)</u></p> |
| <p><u>⑤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조직 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p> |
| <p>제35조(별 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 ----- ----- -----.</p> |
| <p><u>1. 제21조의2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이 아닌 위원</u></p> |
| <p><u>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와 같음)</u></p> |